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6다206154 청구이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윤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전주)2025나31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 2 상고이유 및 제4 상고이유 중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초과 변제로 발생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그 이후 발생한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대등액에서 자동상계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보충적 해석이나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3 상고이유 및 제4 상고이유 중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1) 소멸시효기간 주장에 관하여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999. 10. 11.부터 2019. 1. 15.까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는 거래를 하였다.

(2)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금전의 수수에 위 회사의 계좌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한 주체는 원고 개인이다.

(3) 피고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가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대부업법(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이하의 최고이자율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위 제11조 제1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미등록대부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 4항,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조의 해당 규정 참조). 또한 대부업법 제19조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러한 강행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이자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에 관하여 법률이 그 반환을 직접 정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위 강행규정과 형사처벌 규정을 통하여 채권자의 보유가 금지되는 위법한 이익을 채무자에게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상법 제6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의 단기로 정한 것은 대량·정형·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의 특성을 소멸시효기간의 국면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는 상행위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상인이 약관 등 정형화된 방식으로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같은 내용의 상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무효 사유가 다수의 거래에 공통으로 발생하여 이를 일괄적·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21015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등 참조)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반면 이 사건 대여는 개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약 20년간 이루어져 왔는데, 그 과정에서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 주요 거래조건은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통해 건별로 정하여졌고, 차용증 중에는 전부 수기로 작성된 것도 있는 등 개별적·비정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피고가 약관 등 정형화된 방식으로 다수의 거래

상대방과 같은 내용의 거래를 반복하였다고 볼 사정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최고이자율 초과로 인한 반환 범위도 개별 거래의 약정 내용과 변제 경위에 따라 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법하게 수령한 이익 반환 문제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그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소멸시효 기산점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본이 소멸한 후 초과 지급이 이루어질 때마다 발생하고 각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0. 11. 14. 자, 2000. 12. 31. 자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그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2001년 공정증서에 의한 정산합의에 따라, 2002. 8. 10. 자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그 이후에 작성된 2005. 3. 30. 자 차용증에 의한 정산합의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3, 4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001년 공정증서와 2005. 3. 30. 자 및 2008. 8. 18. 자 각 차용증을 각 그때까지의 모든 대여금 채권채무에 관한 정산합의로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처분문서의 효력, 다툼 없는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011년 공정증서와 2011. 2. 22. 자 차용증 및 2011. 12. 31. 자 차용증을 정산합의로 보면서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산정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 위반, 심리미진, 약정금 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제6, 7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5. 3. 30. 자 차용증에 의한 정산합의를 유효하다고 보고 그 이후의 대여와 변제에 관하여 변제충당을 거쳐 2008. 8. 18. 자 및 2011. 2. 22. 자 각 정산합의의 효력 범위를 차례로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변제충당,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